##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

발의연월일: 2020. 6.25.

발 의 자:이명수·박덕흠·성일종

강대식 • 박성중 • 김성원

홍문표 · 김태흠 · 추경호

최형두 • 권명호 • 윤창현

하영제 · 서범수 · 임이자

김희국 · 김영식 · 김석기

김형동 · 강기유 · 김희곤

태영호 · 이만희 · 이채익

신원식 · 서정숙 · 구자근

金炳旭 의원(2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0\sim20$ 대가 전체 헌혈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혈액원이  $10\sim20$ 대가 밀집한 고등학교, 대학교, 군 중심의 헌혈자 확보의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던 관행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 • 질병

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담당부처로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전문 가로 국한하다보니 혈액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조정 및 마련에 한 계를 보여 왔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헌혈 교육, 근로자들의 헌혈시간 보장, 예비 군 및 민방위 대원 헌혈 시 훈련시간 인정, 헌혈자 예우 확대 등 생애 주기별 헌혈장려운동 전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로 하고, 제4조를 제4조의3으로 하며,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위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고등학교에서의 헌혈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2. 정부 및 공공기관 내의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 3. 군(예비군ㆍ민방위 포함)에서의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 4. 헌혈자 포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헌혈 장려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국가헌혈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보건복지부장관
- 6. 헌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국가헌혈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제4조"를 "제4조의3"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적극
	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건
	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
	<u>성 및 운영) ① 제4조의 책무</u>
	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
	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
	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u>둔다.</u>
	②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등학교에서의 헌혈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공공기관 내의 헌혈
	<u>장려에 관한 사항</u>
	3. 군(예비군·민방위 포함)에
	서의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
	4. 헌혈자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와 관련하
	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제4조(헌혈 권장 등) (생 략)

제4조의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생 략)

립) (생 략)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생 략)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6조(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 사항

- ③ 국가헌혈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 리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보건복지부장관
- 6. 헌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국가헌혈협의회 구 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현행 제 4조와 같음)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 립)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현행 제4조의4와 같음)

군의료기관(軍醫療機關)에 설치하는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u>.</u>